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 (행정자치부 예규 제77호, 일부개정)

행정자치부는 지난 1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일부 개정하고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등이다. 개정전문은 협회 홈페이지(www.kmcca.or.kr)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편집자주]

### ➤ 개정 및 시행

- 개정일 : 2017. 1. 23, 시행일 : 2017.2. 1.

### ➤ 주요내용

- 제한입찰 시 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완화  
- 계약목적물의 1배(추정가격 50억원 미만 0.7배) 이내 → 1/3배 이내

개정전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요건	비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li> <li>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문·그밖의 공사</li> <li>〈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계약목적물의 <b>1배 이내(50억 미만 공사 0.7배 이내)</b></li> <li>규모·양 제한 예외 - 금액 제한</li> </ul>
	물품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li> <li>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li> </ul>	

개정후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2절 제한입찰의 범위와 구분			
제한의 종류	계약 목적물	제한요건	비고
1. 해당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종류의 실적으로 제한	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추정가격 30억원이상 종합공사</li> <li>추정가격 3억원이상 전문·그밖의 공사</li> <li>〈별표1〉 특수한 기술·공법이 요구되는 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계약목적물의 <b>규모 또는 양의 1/3이내 단, 계약목적물의 특성, 안전성, 난이도 등 고려 규모 또는 양의 1/3 이상 1배 범위에서 최소실적기준 정할 수 있음</b></li> </ul>
	물품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특수한 설비·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li> <li>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li> </ul>	



● 수의계약 안내 공고기간 명확화

– 3~5일 → 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

개정전	개정후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제3절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1. 금액기준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 ~ 5일)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는 수의계약 중에서 “제4절”에 따른 품질확인과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일 이상,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 분담이행방식의 지연배상금 부과기준 명확화

– 공사 계약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부분에 한하여 지연배상금 납부

개정전	개정후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1. 지연배상금	1. 지연배상금
아. <신 설>	아. <u>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 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u>